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인력 처우 개선〉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13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 연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8. 4.

다. 회 부 일 : 2026.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채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 연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공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 안 제10조의2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1)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생)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① (현)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현행	개정안
략) 1. (생략) <u><신설></u> 2. ~ 6. (생략) <u><신설></u>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2.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원천기술과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직·기술직 평균 보수는 2021년 약 9,628만원에서 2025년 약 1억 60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기관 연구인력 평균 보수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보수	9,628만원	9,913만원	1억 79만원	1억 286만원	1억 603만원

※ 연구직·기술직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액, 각종 수당 및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기관별 평균 보수의 단순평균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2025년 기관별 평균 보수는 약 7,772만원에서 1억 3,044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기관별·연구분야별로 처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4년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신입인력 평균 초임은 3,910만원으로 기업의 3,990만원보다 낮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신입사원 평균 초임도 공공연구기관은 4,790만원으로 기업의 5,08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박사학위 소지자의 5년차 평균 급여 역시 공공연구기관은 5,770만원으로 기업의 6,150만원보다 낮았음.

-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연구기관의 신입 및 5년차 평균 급여 증가율은 각각 6.5%와 6.4%인 반면, 기업은 각각 17.0%와 18.4%로 나타났고, 공공연구기관이 이공계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사유로 ‘임금·복리후생 등 물

질적 보상 제공의 곤란'이 제시된 비율도 43.8%에 이르렀음.

-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신진·저연차 연구인력의 상대적인 보수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관별 처우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측면은 확인할 수 있음.
- 현행법 제10조의2제1항은 이미 정원·인사 관리,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총인건비, 실행인건비, 일부 연구인력의 별도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 등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연구인력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을 정원·인사 또는 예산에 부수되는 사항이 아니라 독립적인 운영지침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처우개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처우개선 정책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우 수준과 민간·대학 등 다른 부문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추진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3항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같은 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항은 현행법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결과 반영의무를 출연연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기관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운영지침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직접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순한 중복 규정이라기보다는 실태조사와 출연연구기관의 처우개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이 인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공공연구기관·기업 등 이공계인력이 근무하는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특히 조사대상인 공공연구기관에는 이 법에 따른 23개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사만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직군별·고용형태별 처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대학·공공연구기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상대적인 처우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만을 운영지침의 근거로 삼도록 하기보다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실제 처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2항의 문구를 보완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의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침”이라는 표현은 제1호의2에 따른 별도의 운영지침이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중 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처우개선 운영지침의 적용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때 연구직·기술직, 박사후연구원 및 기간제 연구원 등 직군과 고용형태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관별·직군별 처우 수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과 같이 처우개선을 독립적인 운영지침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처우개선에 관한 운영지침의 제정·변경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실태조사와 출

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처우개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